

제 1524 호  
1990. 11.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강 보 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65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3

제2659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4

제2660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5

◎ 규 칙

제2361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7

◎ 고 시

제372호 도시계획미판지구실효 ..... 14

제373호 도시계획미판지구결정및변경결정 ..... 14

(이면계속)

공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568호 적선지구제5지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 15

● 구 고 시

- 제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종로) ..... 16
- 제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중구) ..... 16
- 제2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 17
- 제30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성북) ..... 17
- 제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 18
- 제4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 22
- 제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 24
- 제4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 27
- 제7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구로) ..... 28

● 구 공 고

- 제9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중구) ..... 29
- 제104호 주택자재생산업자영업정지및불합격제품파기공고(양천) ..... 29
- 제27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노원) ..... 30

● 시교육위원회고시

제4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 3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1. 6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⑩

◎ 서울특별시조례제265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서울특별시의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상공과장, 소비자보호과장, 노정과장, 환경과장, 투자관리담당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계의 대표가 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상공과 공정계장이, 서기는 상공과 소속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자의 절차, 용자한도액, 상황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시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등) ① 시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 예규 제320호 및 예규 529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강에 의하여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1. 9

서울특별시장 고건

○서울특별시조례제2659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통국란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교통우발부담금에 관한 사무	○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제11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13	구청장
가. 부담금의 부과·징수	○ 동법시행령 제 9조의 10	
나. 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의 기록·관리	○ 동법시행령 제9조의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1. 9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660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장”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제10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5조중 “주거지역”을 각각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7조중 “시장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4호중 “공동주택”을 삭제한다.

제12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중 “아파트”를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 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 4항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중 “및 기존건축물·도로등이 인접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를 “또는 기존건축물·도로등이 인접한 건축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중 “위원회”를 각각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중 “위원회”를 각각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 1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한다. 제22조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공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12호중 “관람집회시설”을 “관람집회시설(집회장중회의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 제2항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7항을 삭제한다.

③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높이 5미터이상, 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6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④ 건축물의 후면·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를 “시장등이 담당하다고”로 한다.

제34조중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으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제33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4조의 2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항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①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

를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건축물의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이 경우 미술장식품의 설치 위치, 모양, 규모 및 건축단과의 조화 여부등을 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1조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2 제1항중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13인"을 "25인"으로 하고, 동조제 2항중 "건설국장"을 "주택국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및 제1항중 "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3인이상 5인"을 "5인이상 8인"으로 하며, 동조제 3항및 제4항중 "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47조의3 및 제47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보고)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유지 관리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 4(오피스텔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

기준)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9조중 "시장"을 "시장등"으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이 3분의 2를 조정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제4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 2(권한의 위임) 영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20층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선 후퇴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2] 용적율표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

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 다만,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에는 400  
 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오피스텔건축가능구역및건축기준(제47조의  
 4관련)

1. 건축가능구역 및 규모

상업지역안에서 폭 12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세부건축기준

- 가. 각실의 전용면적은 30㎡이상으로 한다.
- 나. 각실의 사무부분과 주거부분이 구조적  
 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건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부분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다. 각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거부분에 설치하되, 그 면적을 1.5㎡이  
 하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욕실(샤워기  
 를 포함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 라. 각실의 냉방방열비는 중앙집중공급식  
 으로 하여야 한다.
- 마. 각실의 외벽부분에는 노대를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 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다  
 른 용도의 시설을 층별 방화구획등으로  
 구분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락  
 시설과의 복합건축은 금지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  
 용조례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1. 6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⑩

●서울특별시규칙제2361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  
 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  
 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낮  
 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  
 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  
 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  
 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p>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p>서 위원회의 신뢰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p>
<p>1.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p>
<p>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다만,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은 용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용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p>
<p>3.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자</p>	<p>제6조(용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용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4조(용자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맡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용자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 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용자하는 대출기금을 감안하여 회계년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p>
<p>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6.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환표 증명서 7. 협동조합가입확인서(가임업체에 한한다.)</p>	<p>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p>	<p>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용자대상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p>	<p>제8조(용자업체의 관리) 시장과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추천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전화번호
	③ 기업체명			
	④ 주소			
사업체규모	⑤ 상시종업원		⑥ 자산총액	원
대상업종과품목	⑦ 업종		⑧ 품목	
⑨ 자격요건				
신청자금	기금구분	⑩ 총소요액	⑪ 용자신청액	⑫ 비율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공장등록증사본</li> <li>3. 사업자등록사본</li> <li>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허가대상업체에 한한다)</li> <li>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li> <li>6.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원료증명서</li> <li>7. 협동조합가입확인서(가업업체에 한한다)</li> </ol>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관리카드

(앞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공장							
공장현황	생산품목	자산총액 (천원)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상업시설 원수	비고		
용자내용	용자청약 (천원)	대출일자	상환기간	대출금리	용자금도	비고		
			자: 지:	년				
상환실적								
회수	년월일	상환금	비고	회수	년월일	상환금	비고	

(뒷면)

공장 위치도

적 요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372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실효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중 다음 3개 구간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82.4.22)로 결정된후 지체승인 기간 도과로

인하여 결정후 2년이 되는 다음날로 각각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마목 규정에 따라 실효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1.7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실효조서

구 분	도시계획	종별	위 치	폭(m)	연장 (m)	면적 (㎡)	비 고
실효	미관지구	4	사당동-도곡동	양측12	6,200	148,800	남부순환도로
"	"	4	사당동-도곡동	"	5,800	139,200	효령로
"	"	4	팔죽거리-성촌	"	2,600	62,400	

-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373호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목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0. 11.7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별첨

- 나. 관계도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구 분	도시계획	종별	위 치	폭(m)	연장 (m)	면적 (㎡)	비 고
결정	미관지구	4	사당동-도곡동 (남부순환도로)	양측12	6,200	148,800	실효구간

구분	도시계획	종별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비고
결정	미관지구	4	사당동-도곡동 (효령로)	양측12		5,800	139,200	"
"	"	4	우면동-도곡동	"		2,600	62,400	"
변경	"	2	기정	신사동-포이동	"	6,200	148,800	강남대로
			변경	신사동-양재동	"	4,900	117,600	
결정	"	4	양재동-염곡동	"		2,450	58,800	"
변경	"	4	기정	압구정동-적삼동	"	6,600	158,400	논현로
			변경	압구정동-포이동	"	6,750	162,000	
변경	"	4	기정	포이동-양재동	"	2,000	48,300	백지
			변경			0	0	
결정	"	4	양재 IC-수서IC	양측12		6,250	150,000	양재대로
변경	"	2	기정	포이동-양재동	"	2,300	55,200	백지
			변경			0	0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568호**  
**적선구역제5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57호(85.5.30)로 시행인가된 적선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11.8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적선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종로구 적선동 161번지 외50필지  
 3. 사업시행인가근거 : 서울특별시 고시 제357호(85.5.30)  
 4. 시행자 주소, 성명  
 ○ 사무소소재지 : 종로구 적선동 122-1

○ 설명:적선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  
장 박용권

5. 완료내역

가. 토지

- 시 행 면 적 : 3,504.6㎡
- 대 지 면 적 : 2,601.0㎡
- 공공용지면적 : 903.6㎡

나. 건물

- 건축면적:1,038.38㎡ (건폐율:39.92%)
- 연면적 :19,849.97㎡(용적율:473.71%)
- 층 수 : 지상 12층, 지하4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구 고 시

●종로구 고시 제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1. 10

종로구청장

1. 사업명: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2. 사업주체 : 롯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71

-1호의 3필지

- 나. 대지면적 : 7,191㎡
- 다. 연면적 : 8,335.23㎡
- 라. 규모 : 연립주택 3층 6동 48세대
- 4. 사업시행기간:'90.10-'91.8
- 5. 고시사항: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인

● 중구 고시 제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7호(90.4.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11호(90.5.17)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990. 11.10

중구청장

가. 사업시행위치:신당동 375의16-25

나.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신당동 375번지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폭(B)=8m, 연장(L)=38m

라. 사업의 시행자: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노지, 건물 세목조서: 별항(토지, 건물 변동없는 물건은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

**토 지 조 서(변경)**

소재지번호	지 목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성명		비 고
			주 소	성 명	
(당초) 신당동 421-33	도로	7	신당동 421-15	손 현 수	
(변경) 신당동 375-55	도로	15	중구 신당동 375	이공삼성합자 회 사	
(당초) 신당동 370-89	대	23	신당동 370-90	김 부 환	
(변경) 삭제	-	-	-	-	

<p><b>●양천구 고시 제27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b></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11.7 양 천 구 청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li> <li>2. 사업주체: 동신재건축 주택조합</li> <li>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양천구 신정동 1194-5</li> <li>○ 면적: 3,261.41㎡</li> <li>○ 규모: 아파트 12-13층 1동63세대</li> </ul> <p>4. 사업시행기간: 90.11-91.10</p> <p><b>● 성북구 고시 제30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구 관내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2523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같은법 제</li> </ol>
---	---

<p>24조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11. 성 북 구 청 장</p> <p>1. 사업시행지:성북구 안암동5가 157일대</p> <p>2. 사업의종류:도시계획사업(학교)</p> <p>3. 사업시행의 명칭:승가학원 교사신축</p>	<p>4. 사업의규모:가. 사업시행면적:23,575㎡ (도시계획결정면적)</p> <p>나. 사업시행내역 :                  [기존-교사3층2동 연면적:2,588.7㎡                  신축-교사1동(지하1층, 지상5층)]</p> <p>5. 사업시행자 주소성명:성북구 안암동5가 157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서황룡</p> <p>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	--

구 분	위 치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비고
			기 존	신 축	
도시계획 사업(학교)	안암동 5가 157	90.11.~ 91.10.31	3층 2동 연면적 2,588.7㎡	5층1동(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 3,624㎡	

<p>●성북구 고시 제32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성북구 고시 제6호(90.4.4)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성북동길(성북국교앞) 확장공사의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p>	<p>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90.11.7 성 북 구 청 장</p> <p>○ 변경고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종류및 명칭:성북동길(성북국교앞)확장공사</li> <li>-수용또는 사용할 건물소재지, 지번,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li> <li>-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별첨</li> <li>-기타사항은 변경없음.</li> </ul>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성북동 65-8	대	116	116	대	김 연 수	성북동 65-8				변경사항없음
2	" 65-7	"	142	142	"	강신일	성북동 65-7				"
3	" 65-6	종교용지	175	175	"	계산발전가독교 장외교회유지재단	서대문구 방천동 31	서울특별시 성북구(가정복지과)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구립성북노인정분회	"
4	" 65-2	도 로	96	96	도 로	한 경 성	중구 필동 2가 134				"
5	" 65-14	대	46	46	대	이 병 준	성북동 65-14				"
6	" 65-13	대	50	50	"	김 상 근	성북동 166-3				"
7	" 65-5	"	66	66	"	유 근 술	경기 광주 광주 역리 5				"
8	" 65-12	"	73	73	"	소 병 식	성북동 65-12				"
9	" 65-11	"	102	102	"	이 형 택	" 65-4				"
10	" 65-4	"	129	129	"	심 권 숙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힐아파트31동603호				"
11	" 65-10	"	96	96	"	김 재 명	성북동 60-11				"
12	" 65-9	"	76	76	"	진 병 환	성북동 65-9				"

제1524호  
시

제 1990. 11. 10  
34-1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부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성북동 65-3	대	60	60	대 이관익	성북동 65-3					변경사항없음
14	" 65-1	도로	60	60	도로 한성현	중구 필동 2가 134					"
14건				1,287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101-5	주택 점포	스레트브릭	40	주택 점포	방효명	성북동 101-5				40㎡ 무허가
2	" 101-6	"	"	79.05	"	김재룡	" 101-6				79.05㎡ 무허가
3	" 65	"	"	107	"	이남복	" 65				87.96㎡ 중
4	" 65-8	"	연와조 스라브	188.02	"	김영수	" 65-8				50.63㎡ 중
5	" 65-7	주택 목기	목조와	105	"	장신열	" 65-7				70.29㎡ 중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성북동 65-6	사 무 실	연와조·스라브 목조·기와	443.76	사무실	서울특별시	삼선5가 411	성북구청장	삼선5가 411		변동사항없음
7	" 65-14	주 택	목조·기와	78	주 택 점 포	이병준	성북동 65-14				30.4㎡ 중
8	" 65-13	주택·점포	"	87	"	김황근	" 65-13				39.4㎡ 중
9	" 65-5	근린시설	"	93	근린시설	유근술	" 65-5				45.4㎡ 중
10	" 65-12	주 택	연와조·브릭 스 레 트	89	주택점포	소병식	" 65-12				26.58㎡ 중
11	" 4 65-11	주택·점포	철근콘크리트 스 라 브	928.94	"	이형택	" 65-4				96.64㎡ 중
12	" 65-10	영 업 용	연 와 조 스 라 브	189.23	"	김재명	" 60-11				36.77㎡ 중
13	" 65-9	주택·점포	"	180	"	김병환	" 65-9				138.68㎡ 중
14	" 65-3	주택·점포	새만벽돌 스 라 브	176.76	"	이환익	" 65-3				30.01㎡ 중
15	" 65-15	주 택	목 조 기 와	47.60		오	" 65-14				변동사항없음
15건				2832.36							계13건 772.11㎡ 중 유허가11건653.06㎡ 중 무허가2건119.05㎡ 중

제1524호  
 시  
 1990.11.10  
 31-21

●은평구고시제4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3.20)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제19호('90.4.20)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84-88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은평구 공고 제57호('90.4.18)및 서울 은평구 공고 제77호('90.5.14)로 공람 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31호('90.6.7)로 실시계획 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 을 추가보통 서울시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보완지시가 있어 별첨변경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1. 2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은평구 대조동 88의 16-88의 322간

나.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대조동 84-88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개설 B=6M, L=116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91. 12. 31

바.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사.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및 지장물조서 : 별첨

아. 변경내용 :  
○ 토지 : 소유자, 관계인 고시누락(소유자 상이한 토지)  
○ 물건및 관계인 고시누락

토 지 조 서

연번	지번	지목	수용신청 수(라)	지상물 구조	총 진행	수용신청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대조동 88-459	대	16㎡				은평구 대조동 88-16	한의호			
2	대조동 88-465	대	73㎡				종로구 사리동 80-31	신광우			
3	대조동 88-381	대	41㎡				은평구 대조동 88-242	천명달			
4	대조동 88-380	대	9㎡				은평구 대조동 88-242	권명달			
5	대조동 88-378	대	76㎡				은평구 대조동 88-248	임중래			
6	대조동 88-377	대	68㎡				은평구 대조동 88-252	황수연			
7	대조동 88-471	대	7㎡				대조동 73	서남전			
8	대조동 88-472	대	4㎡				대조동 11 용산구 청파동17135 대조동 73 대조동 73 대조동 73 대조동 73	박의자 박수자 박길수 박명수 박문수 박명자			

건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	지장물 구 조	총 건평	수용신청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대조동 88-253			건 물 (연와조 세면와급)		15㎡	대조동 88-253	고양순	서울중구 남대들로 2가 9의 1	주식회사 국민은행 (공화통계청)	근저 당권
2	대조동 88-248 (378)			건 물 (연와조 세면와급)		45㎡	대조동 88-248	임중래			
3	대조동 88-242			건 물		6㎡	대조동 88-242	권명달			
4	대조동 88-16			건 물		8㎡	대조동 88-16	한의호			

지 장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	지장물 구 조	총 건평	수용신청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대조동 88-253			연탄보일러 수도전 담 장 담 장 담 장		2개 1식 1.9×4.7㎡ 1.3×4.7㎡ 1.9×8.7㎡	대조동 88-253	고양순	서울 중구 남대들로 2가 9의 1	주식회사 국민은행 (공화통계청)	근저 당권
2	대조동 88-252			대문(철제) 담 장 담 장 담 장 수도전 복판나무 감나무 장독대		1식 1.8×1.9 8×1.8 6×1.7 1식 1주 1주 1식	대조동 88-252	황수연			
3	대조동 88-248 (378)			연탄보일러 대추나무		3식 1주	대조동 88-248	임중래			
4	대조동 88-242			세라믹보일러 수도전 장독대 정원석 라일락(大) 사철나무 냉큼장미 단 누공화 회양무 장		1식 2식 1식 1식 1주 3주 3주 1주 4주 3주 2.3×1.5	대조동 88-242	권명달			

●은평구고시제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353호('89. 7. 21)로 시설결정되고 서울 은평구 고시제16호('89. 7. 28)로 지적승인된 녹번동 81-131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인 은평구 녹번동 139의 14-131의 176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3호('90. 7. 13)로 공람 공고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31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20호('90. 4. 17)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토록 서울시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 보완 지시가 있어 별첨 변경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1. 2  
은 평 구 청 장

- 사업의 시행지: 은평구 녹번동 139의 14-131의 176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녹번동 81-131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개설  
B=3-4→8m L=140m A=11.2a
-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1. 12. 31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번	지번	지목	수신지	용적률	지장물구조	총면적	수용신청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녹번동 139-40	대	12㎡					녹번동139-13	박순갑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서울신복은행 (연신내지점)	근저당권
								" 139-13	박중기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서울신복은행 (연신내지점)	근저당권
								" 139-13	김복남			
2	녹번동 139-42	전	2㎡				녹번동153	송용학				
3	녹번동 141-118	대	10㎡					녹번동141-87	김광선	도봉구 미아 3동 131-19	국(보통촌) 북부보훈지청	가등기 근저당권
4	녹번동 141-117	대	1㎡					녹번동118-42	이경삼			
5	녹번동 141-115	대	6㎡					녹번동141-89	신우철			
6	녹번동 141-114	전	70㎡					녹번동141-10	오순근			
7	녹번동 131-169	대	40㎡					녹번동157-42	김수길			

연 번	지 번	지 목	수 신 지	용 적	지장물 구조	수용신 장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8	녹번동 131-170	대	12㎡				녹번동157-42	김수길			
9	녹번동 131-172	대	12㎡				녹번동141-10	손해용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9-31	서울시 축산기업 조합 세마을금고	근저당권
10	녹번동 132-62	대	7㎡				용암동200 녹번동105-16 대조동221-58 녹번동132-23 녹번동131-39 녹번동29-157 성동구도선동 185-1 대조동64-2 중구 명동2가 2-2 대조동52-5 녹번동136-17 동작구대방동 245-15 대조동14-13 용암동산1 서대문구홍계 동 330-47 녹번동131-69 녹번동131-69 강서구열창동 20	허 현 박운철 신도휴 이경도 이경일 박제관 박용규 유동준 윤경순 김상호 박복현 조한철 박노환 김광석 박광성 박기태 김종덕 정상덕			
11	녹번동 132-61	대	14㎡				녹번동132-6	김은모			
13	녹번동 141-119	대	42㎡				녹번동139-1	김광원			

건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수 신 지	용 적	지 장 물 구 조	종 건 형	수 용 신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녹번동 141-87	건물	5㎡					녹번동141-87	김광선		국(원호처) 국(원호처)	가동기 근저당
2	녹번동 141-10	건물	5㎡ 3㎡					녹번동141-10	오순근			
3	녹번동 131-49 (116,117)	건물 건물	27㎡ 8㎡					녹번동157-42	김수길			
4	녹번동 131-66	건물	8㎡					녹번동141-10	손해용	영등포구 여의 도동17-9 성동구정수동 2가19-31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공판장) 서울시축산 기업조합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 장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수 신 지	용 적	지 장 물 구 조	종 건 형	수 용 신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녹번동 139-13				담장 대문(철제) 수도계량기 기타시설 정확조		17.33㎡ 2 식 1 식 1 식 1 식	녹번동139-13	박순갑	중구남대문로 2가10-1 (쪽)	서울신판문로 (연신내간이거점)	근저당권
2	녹번동 141-10				철제전열장 수도전		1 식 2 식	녹번동 141-10	오순근			
3	녹번동 131-49 (116,117)				수도전		1 식	녹번동157-42	김수길			

<p>◎은평구고시제47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시설결정되고 서울 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21)로 지적 승인된 녹번동 105-108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은평구 녹번동 105의 1-108의 27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은평구 공고 제58호('90. 4. 18)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25호('90. 5. 14)로 실시계획 인가된 고시 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토록 서울시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 보관지사가 있어 별첨 변경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코자 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90. 11. 2</p> <p>은 평 구 청 장</p> <p>가. 사업의 시행지: 은평구 녹번동 105의 1-108의 27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녹번동 105-108간 도로확장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개설 B=6m, L=62m(도로)</p> <p>라. 사업의 시행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p> <p>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91. 12. 31</p> <p>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첨</p> <p>아. 변경내용: 소유자 관계인 고시누락(소유자 상이한 토지)</p>
--	--

토 지 조 서

번	지 인	지 폭	수 량	지 장물	중	수 용권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1	녹번동 108-50	대	42㎡				은평구 녹번동 108-30 유용호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	압류
2	녹번동 108-44	대	9㎡				은평구 녹번동 108-30 유용호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	압류
3	녹번동 108-51	대	2㎡				녹번동108-31 (1층2호) 김언이 녹번동125-20 (1층1호) 심현섭 녹번동108-31 (지층2호) 권종한 (지층1호) 정제안 (2층2호) 송광복	영등포구여의도동 36-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건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수 신 지	용 적	지 장 물 구 조	총 건 평	수 용 신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녹 번 동 108-30				주 택		9㎡	녹 번 동 108-30	유 용 호			
지 장 물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수 신 지	용 적	지 장 물 구 조	총 건 평	수 용 신 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녹 번 동 100-30				부 엿 (브릭스스케르 및 선라이트)  담 장 (새멘브릭)  담 장 (새멘브릭)  대 문 (철 계)  라 일 락  살 구 나 무  개 나 리  단 풍 나 무  향 나 무	13.3㎡  6.9×1.6  7.6×1.6  1.7×1.9  1 주  1 주  1 주  1 주	녹 번 동 108-30	유 용 호				
<p>●구로구고시제74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972호('88. 12. 12)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한 구로구 궁동 107-5의 24필지상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1990. 11</p> <p>구로구청장</p> <p>- 다 음 -</p> <p>가. 사업 시행지: 구로구 궁동 107-5의 24 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한양여자 상업학교</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장 진승균 강서구 화곡동 477-1</p>						

라. 사업시행규모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11. 10 중 구 청 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시행면적	17,024㎡	17,924㎡	변경없음		
건축면적	1,141.68㎡	1,141.68㎡	•		
건축연면적	6,544.28㎡	6,544.28㎡	•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89. 10 - 1990. 9. 30 변 경 : 1989. 10 - 1991. 9. 30 바. 공사설계도서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구 공 고                 </div> ◎중구공고제9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를 위한 공 램 공 고  1.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만리동2가 12-51호에서 만리동2가 195-2번지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비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양천구공고제104호  주택자재생산업자 영업정지 및 불합격제품 파기공고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자는 정기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제품을 생산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같은법 제41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1월) 처분하고 같은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는 파기 명령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1. 7 양 천 구 청 장

다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주력사업명	처 분 내 용	사 유	영업정지 기간	
13-17	홍성기와	손문성	신정동 128-105	시멘트 기 와	○영업정지 1월 ○불합격 제품파기 (검사시료 1롯데)	정기검사 불합격 (치수부적합)	'90. 11. 7 - '90. 12. 6	
<p>◎노원구공고제272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 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요제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동시행령 제27조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p> <p>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 가 사업 개요</p>					<p>지할 것이나, 파수행자에 대해서는 이 공 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1 노 원 구 청 장</p>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노 원 구	월계1동 495주변	B=6m	인가일로부터	서고시 30	서고시 30			
월 계 동	도로 개설공사	L=70m	'91. 12. 30	('82. 1. 23)	('82. 1. 23)			
노 원 구	상계5동451-453간	B=8m	"	노원구고시374	노원구고시19호			
상 계 동	도로개설공사	L=55m	"	('89. 12. 29)	('90. 7. 23)			
"	상계동 434도로 개설공사	B=8-10m L=130m	"	서고('74. 5. 11)	좌 동			
<p>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p> <p>라.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생략</p> <p>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바. 공람장소 :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시교육위원회고시**

**◎시교육위원회고시제4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 등각구 대방동 13-2번지 일대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 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11. 5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②

-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번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영등포고등학교

**체육관 및 강당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등각구 대방동 13-2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1) 교지면적: 39,996㎡
- 2) 건축면적: 기존건물 3,671.3㎡  
금회증축 718㎡  
금회철거 782.1㎡  
계 3,667.1㎡
- 3) 건물연면적: 기존건물 7,926.4㎡  
금회증축 848㎡  
금회철거 732.1㎡  
계 7,992.3㎡

4) 재 원: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착공년월일 1990. 11.

준공예정일 1991. 7.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강당 증축으로 교육여건 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토지수용법 4조 3항의 관계인) (토지조서) 생략.

**사 령**

◎1990년 11월 6일자

**6급 공무원 전보**

령 제37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상세	노원구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방형식	종합건설본부	강남구	"

**5급 공무원 전보**

령 제37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김수	종로구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사무관
이치우	종합건설본부	종로구	"

◎1990년 11월 10일자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변경      영 제380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 창 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소청90-106. '90. 11. 7)에 따라 1990. 5. 30 감봉3월처분을 동일자 감봉 1월로 변경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사
유 인 상	"	차량정비사업소	"
기동직공무원 면직      영 제38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보 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행 정 과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0등급)
기동직공무원 징계처분      영 제382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제 통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아 동 병 원	지방사무보조원 (기능10등급)
홍 흥 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	"
6급이하 기술직 징계(불문경고) 처분      영 제38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가 재 리	불문경고 (서울시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지방수도토목기원
안 규 문	불문경고 (서울시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전기기원
인사발령통지      영 제384호			
서울특별시			
지방토목기과			강 순 친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보함.			'90. 11.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천 해 봉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보함.	'90. 11.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국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김 용 호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보함.	'90. 11.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이 익 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90. 11. 5 대 통 령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치수와 치수계장에 보함.	'90. 11.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홍 성 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90. 11. 5 대 통 령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90. 11. 5 서울특별시장

공무국의 여행 경력 정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리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교통방송본부	지방전문직 가급	유복일	동경	'90. 11. 6 - 11.10 (5일간)	대산출산 (주)부담 시비(940불)	제26회 국제방송기 기전 참석 및 동경 도 교통방송 시설 견학
소방본부	지방별정직4급 소방령	방동환 조운상	"	" '90. 11. 26 -12 2 (7일간)	시비 (2,705불)	" 동경도 소방업무의 전산화 운영조사
"	소방사	김영철	"	"	"	"

공무국의 여행명령통보						
소속	직명	성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상수도사업 본부	지방부이사관	박형석	L.A	'90. 11. 10. - 11. 16 (7일간)	시 비	수질에 관한 국제 회의참석 및 수도 경영 실태연구
	지방전문직 가급	이재준	L.A, 동경	'90. 11. 10 - 11. 18 (9일간)		"
공무국의 여행명령통보						
소속	직명	성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생활체육과	지방임업기과	최용호	모스크바	'90. 11. 10 - 11. 19 (10일간)	초청자 및 시체육회 부담	서울-모스크바 양도시간 스포츠 교류 협정체결
시민과	지방행정 주사보	이병엽	동경, 홍콩, 싱가폴, 방콕	'90. 11. 12 - 11. 20 (9일간)	시 비 (2,402불)	여권업무 관련 해외연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지 사 함</div> 동침사 준공			가. 청사준공일시 : '90. 11. 9(금) 15 : 90 나. 청사위치 -- 구 청 사 : 강남구 도곡동 517-11 -- 신축청사 : 강남구 도곡동 459 다. 신축청사 현황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축연면적 : 696.3㎡ (210.62평) - 대 지 면적 : 1,181.4㎡ (357.37평)			
1. 우리지 강남구 산하 도곡 제2동 신축공 사 준공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하니 청 사 위치 변경에 따른 공고사항을 공지합니 다.			서 울 특 별 시 장			